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34 발의연월일: 2022. 8. 31.

발 의 자:양금희·권성동·김영식

박 진・배준영・서일준

성일종 · 윤상현 · 윤창현

이헌승 · 정우택 · 지성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미래 먹거리 신산업 시장의 핵심 분야로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안보적인 접근과 함께 파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종 규제로 인해 신속한 투자와 시설의 확대 등이 지연되며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업계의 공장 신·증설이나 천문학적 투자계획 발표, 연구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주 52시간제 및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등 규제개선의 필요성 등을 부각시키고 있어도 관련 대책은 부족하여 전략산업의 경쟁력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게다가 국가적 차원의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미흡하여 첨단전략산업의 현실과 미래가 불투명해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 등 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

당성조사와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 업의 선도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제27조제1항 및 제35조 등). 법률 제 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근로시간에 관한 특례) ① 전략산업등의 연구개발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 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2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재정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3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사업

제27조제3항 전단 중 "확보 등"을 "확보, 긴급한 경제적 상황 대응 등"으로. "「국가재정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를 면제할 수 있다"를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협조하여야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계약학과 등"을 "계약학과 및 기초과학분야 학과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기초과학분야 학과 등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거점구축형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 </u> | 제23조의2(근로시간에 관한 특례) ① 전략산업등의 연구개발 등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같은 법 제2 4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2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 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 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
| 거친 경우에는 <u>「국가재정법」</u>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 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 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 | 「국가재정법」제3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40조 |

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1. ~ 3. (생략)

- ② (생략)
- 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확보, 긴급한 경제적 상황 대응 등 ------ '국가 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_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예 비타당성조사 면제에 협조하여 야 한다. -----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

지 조성사업

제35조(전문인력양성) ① 정부는 제35조(전문인력양성) ① -----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 급을 위하여 산업계 · 대학 · 연 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 1. -----계 학과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 력양성사업

2. • 3. (생략) <신 설>

<u>4.</u> (생 략)

② (생략)

| _ |
|-------|
| |
| |
| |
| |
| |
| |
| |
| |
| |
| |
| Π |
| |
| |
| |
| |
| |

- 약학과 및 기초과학분야 학과
- 2. · 3. (현행과 같음)
- 4.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 학과 및 기초과학분야 학과 등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거점구축형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